

교원징계 규정

□ 제정 : 1998. 05. 21

□ 개정 : 2012. 03. 01

□ 개정 : 2016. 08. 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(교수, 부교수, 조교수)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징계사유)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.

1. 사립학교법, 기타 교육관계 법령과 법인 및 본 대학교의 제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
2.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
3. 교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제4조(징계의 종류) ①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중징계 : 파면, 해임, 정직
2. 경징계 : 감봉, 견책

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.

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.

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계하게 한다.

⑤ 제3조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, 그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총장이 별도로 “경고”, “주의”, “호봉승급 제한”, “급여인상 제한”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5조(징계보류)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이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때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5조의 2(징계감경)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. 단, 성폭력범죄, 성매매, 성희롱 및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.

1.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교원

2.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교원
3. 우수교원으로 총장의 표창을 받은 교원
4. 기타 징계위원회에서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다.

제6조(교원징계위원회 설치) ① 본 대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.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.

②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정관에 의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.